

공학교육 전문프로그램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정 2009. 12. 17.)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28조제3항 및 「공학교육 전문프로그램 운영규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26.>

[본조개정 2020.9.1.]

제2조(전문프로그램 운영 학사단위) ① 공학교육 전문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26., 2017.5.22., 2020.1.1.>

1. 건축공학전문 프로그램
2. 기계시스템공학전문 프로그램
3. 기계자동차공학전문 프로그램
4. 전기전자공학전문 프로그램
5. 정보통신공학전문 프로그램
6. 컴퓨터공학전문 프로그램
7.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

② 공학교육 전문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학사단위의 운영 참여 여부는 총장이 정한다. 이 경우 운영하고자 하는 학사단위는 학과회의에서 운영을 결의하여 학장에게 참여를 신청하고, 학장은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이수 프로그램의 구분) 전문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의 명칭은 [별표 1]과 같이 구분하여 표기한다. <개정 2017.5.22.>

제4조(교과목 이수)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각 전문프로그램의 교과목 이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26., 2020.1.1.>

1. 졸업학점 : 130학점 이상(다만,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40학점 이상) <개정 2017.5.22., 2020.1.1.>
 2. 전문교양 교과영역 이수학점 :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위원회와 대학이 정한 교양영역 필수이수 기준을 준수해야 함<개정 2015.8.26., 2018.3.5., 2020.1.1.>
 3. MSC 교과영역: 30학점 이상(다만, 전산학 교과목은 6학점까지만 인정한다) <개정 2014. 4.23.>
 4. 공학주제 교과영역: 설계과정 12학점 이상을 포함한 60학점 이상의 전공 교과목
- ② 학사단위별 교과목 이수는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위원회에서 정하는 전문교양 교과목과 MSC 교과목[별표 2] 중에서 해당 학사단위별로 특성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며, 전공교과목은 학사단위별 전문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 ③ 설계 교과목은 기초설계, 요소설계, 종합설계의 이수체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설계 교과목을 이수하기 이전 또는 종합설계 교과목을 이수한 이후에 이수한 설계 교과목은

설계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

④ 교과목의 이수능은 이수체계를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전입생의 전문프로그램 이수)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입생이 전문프로그램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전입학기의 수강신청 종료전까지 이수신청서[별표 2]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생의 전문프로그램 이수신청은 학사 단위별 프로그램 PD 또는 지도교수와 상담 후 신청하여야 하며, 학사단위별 프로그램 PD의 서명으로 승인한다. <개정 2020.1.1.>

③ 전입생은 전문프로그램을 4학기 이상 이수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0.1.1.>

④ 삭 제 <2020.1.1.>

제6조(이수의 포기)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전문프로그램의 이수과정 중인 학생의 이수포기 신청은 반드시 다음 각 호의 해당 기간 내에 해당 학사단위별 전문프로그램 운영위원장에게 [별표3] 일반프로그램 이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

1. 2학년 전입생: 4학년 1학기 시작 직전

2. 그 외 전입생: 전입학기 종료 직전

② 각 학사단위에서는 전문프로그램에 소속된 3학년 학생이 2학기를 마치기 전에 이수기준에 따른 이수정도[별표 5]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프로그램 이수포기는 사전에 지도교수와 이수에 대한 상담을 충분히 실시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포기에 대한 허가는 학사단위별 프로그램운영위원장이 신청서에 결재함으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전입생의 학점인정) ① 프로그램 이수자는 원칙적으로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프로그램 과정의 전입생은 제4조의 이수 기준에 따라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② 전입생의 전입 이전 취득학점에 대한 전문프로그램의 학점인정은 각 학사단위별로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1.1.>

1. 전입생의 학점인정은 전입 이전 대학의 성적증명서와 이수내용을 심사하여 전문교양, MSC, 공학주제 교과영역으로 구분하여 인정한다. <개정 2020.1.1.>

2. 전입이전 취득한 교과목이 전문프로그램의 3, 4학년 개설 전공과목인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 <개정 2020.1.1.>

3. 전입이전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 단위가 전문프로그램의 교과목 학점 단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문프로그램의 학점 단위 만큼만 인정한다. <개정 2020.1.1.>

4.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학사단위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이 있을 경우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5.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각 전문프로그램별 운영지침(학과내규)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

③ 프로그램운영위원회는 전입생의 전입이전 취득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전입생의 학점인정은 전입학기 시작 3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⑤ 전문프로그램에서는 전입생을 위해 교과목을 계절학기 등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0.1.1.>

⑥ 전입생은 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전입 이전 소속학과(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 전과생의 경우 전적 학과(또는 전공))의 성적증명서와 전문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료를 전문프로그램 이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제8조(평가, 상담 및 관찰) ① 전문프로그램에서는 신입학 시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각종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지도교수와 학기별로 개별 또는 집단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23., 2018.3.5., 2020.1.1.>

③ 지도교수는 지도대상 학생을 관찰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④ 지도교수는 상담 및 관찰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2(졸업자격 심사) 전문프로그램에서는 졸업대상자들에 대하여 전문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는지의 여부를 [별표 4] 공학교육 전문프로그램 졸업인증 심사서 양식에 따라 심사하고 졸업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6., 2020.1.1.>

제9조(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위원회의 위원은 공과대학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학사단위별 전문프로그램 운영 위원장들로 구성하며, 공과대학 행정지원실장은 위원회 간사가 된다. <개정 2019.6.25., 2020.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과대학 학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1.>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의 운영 등 실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⑤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참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관련규정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10조(학사단위 전문프로그램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각 학사단위별 전문프로그램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사단위 소속 전임교수들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

② 학사단위별 전문프로그램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학사단위의 PD가 된다.

③ PD는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④ 학사단위별 전문프로그램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9조에 따른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11조(보칙) ① 이 세칙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학사단위별 운영지침(학과내규)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1.1.>

② 본교의 공학교육 전문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학사단위별 운영지침(학과내규)은 학사단위별 전문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0.1.1.>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세칙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축공학전문 프로그램, 기계자동차공학전문 프로그램, 컴퓨터공학전문 프로그램,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 전기전자공학전문 프로그램, 정보통신공학전문 프로그램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세칙의 시행은 건축공학전문 프로그램, 기계시스템 공학전문 프로그램, 기계자동차공학전문 프로그램, 전기전자공학전문 프로그램, 정보통신공학전문 프로그램, 컴퓨터공학전문 프로그램,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 이수자들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프로그램의 명칭 및 학위 명칭 <개정 2017.5.22., 2020.1.1.>

학과(부)	프로그램명 (전공명)		학위명칭	
	전문프로그램	일반프로그램	전문프로그램	일반프로그램
건축공학과	건축공학전문 프로그램	건축공학	공학사 (건축공학전문)	공학사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Architectural Engineering	Engineering	Bachelor of Engineering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Bachelor of Engineering
기계시스템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전문 프로그램	기계시스템공학	공학사 (기계시스템공학전문)	공학사
Department of Mechanical Systems Engineering	Mechanical Systems Engineering	Engineering	Bachelor of Engineering in Mechanical Systems Engineering	Bachelor of Engineering
기계자동차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전문 프로그램	기계자동차공학	공학사 (기계자동차공학전문)	공학사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Automotive Engineering	Mechanical and Automotive Engineering	Engineering	Bachelor of Engineering in Mechanical and Automotive Engineering	Bachelor of Engineering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공학전문 프로그램	전기 전자공학	공학사 (전기 전자공학전문)	공학사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Engineering	Bachelor of Engineering in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Bachelor of Engineering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전문 프로그램	정보통신공학	공학사 (정보통신공학전문)	공학사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ngineering	Bachelor of Engineering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Bachelor of Engineering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문 프로그램	컴퓨터공학	공학사 (컴퓨터공학전문)	공학사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Computer Engineering	Engineering	Bachelor of Engineering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Bachelor of Engineering
토목환경공학과	토목공학전문 프로그램	토목환경공학	공학사 (토목공학전문)	공학사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Engineering	Bachelor of Engineering in Civil Engineering	Bachelor of Engineering

[별표 2] 전문프로그램 이수 신청서 <개정 2020.1.1.>

전문프로그램 이수 신청서						
학 과(부)		학 년				
성 명		학 번				
휴대전화		e-mail				
프로그램명	공학 전문프로그램					
신청이유						
지도교수 의 견		지도교수		(인)		
본인은 공학교육 전문프로그램에 대하여 지도교수와 의 상담을 통해 충분하게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학에서 제공하는 전문프로그램의 제반 교육과정을 절차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고, 이수에 따라 발생하게 될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전문프로그램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학과(전공) 프로그램운영위원장 귀하						
승인여부	승인	[불허사유]		결 재	담 당	위원장
	불허					

[별표 3] 일반프로그램 이수 신청서 <신설 2020.1.1.>

일반프로그램 이수 신청서						
학 과(부)		학 년				
성 명		학 번				
휴대전화		e-mail				
프로그램명	공학 전문프로그램					
신청 이유						
지도교수 의 견			지도교수	(인)		
본인은 공학교육 전문프로그램에 일반프로그램으로 전환 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하게 이해하였으며, 전환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전문프로그램의 이수를 포기하고 일반프로그램 이수로 전환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학과(전공) 프로그램운영위원장 귀하						
승인여부	승인	[불허사유]		결 재	담 당	위원장
	불허					

프로그래밍 :

[illegible]

[별지서식 1] <삭제 2020.1.1.>